

청약 안내

● 공모주 청약 자격(2020년 04년 01 기준)

구분	청약한도	자격요건기준	증거금율	청약수수료
우대	200%	온라인 매체 청약 (HTS, Web, MTS, ARS)	50%	면제
일반	100%	영업점 청약 (창구/유선)	50%	5,000 원

◦ 기타사항

- 1)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
- 2) 서비스등급 Diamond, Platinum 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
- 3) 개인, 법인 동일 적용
- 4) 우대그룹 선 배정 없음
- 5) 법인고객은 청약수수료 면제(고객등급과 무관)
- 6) 청약수수료는 건당 징수하며, 취소 시 환불되지 않음

● 유상청약

◦ 청약자격

- 1) 배정기준일 현재 동 주식을 보유한 고객

◦ 청약신청방법

- 1) 영업점 창구 내점(전화접수 가능)
- 2) 청약증거금이 계좌에 있는 경우 홈페이지, HTS, MTS 및 고객센터 (1588-6800)로도 청약신청 가능.

◦ 청약시간

- 1) 공지사항에 별도 안내함

● 실기주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주식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 주식은 다시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 위탁원에 의무적으로 위탁되게 되며 증권 위탁원에 위탁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하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을 증권 위탁원이 일괄 수령하여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주식출고를 요청하여 주식실물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 무상/현금 배당시 발행회사는 증권 위탁원 명의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권 위탁원 명의로 배정되었으나 실제 증권 위탁원에 위탁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식,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을 실기주 과실이라 합니다.

◦ 실기주 과실 조회 및 반환 안내

따라서 출고 후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된 주식을 직접보관/타인에게 양도/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주 과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님들께 증권 위탁원 실기주 과실 반환 안내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니 아무쪼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실 곳(거래하시는 증권회사/증권예탁원 위탁 업무팀 주식 권리 1 팀: 02) 3772-9651, 9653, 9646)

◦ 미수령(미교부)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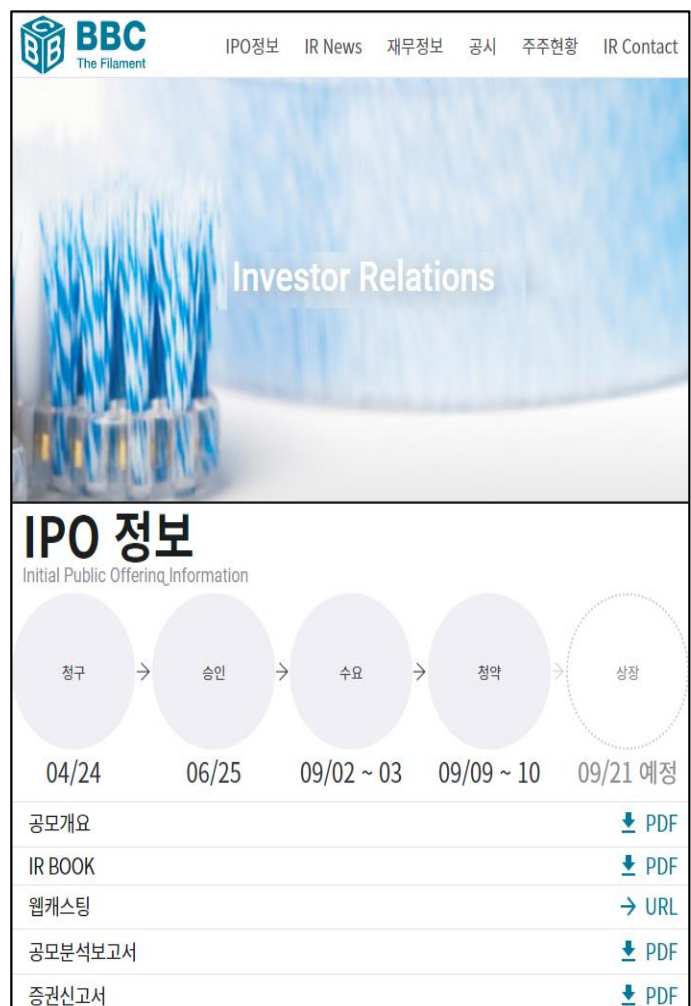
- 1) 주주가 보유주식을 개인간 매도하였더라도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의 권리가 이미 매도하기 전의 주주에게 부여된 경우로 고객이 인식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주식 또는 발행회사가 배당 또는 무상증자 등을 실시할 경우 발행회사는 이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주가 이사 등으로 인해 통지 받지 못 하여 주식이 배정 된 것 을 알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2) 이 경우 미수령 주식은 증권 위탁원 창구에서 직접수령할 수 있습니다.
- 3)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후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위탁하시는 것이고 주소 변경시에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신 분은 증권회사에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계신 분은 증권예탁원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뱅킹/대출/청약>청약업무 가이드 사이트 본문

URL: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비비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IR Page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URL: <https://bestbristle.irpage.co.kr/>



구분	날짜	상세정보
청구	04/24	
승인	06/25	
수요	09/02 ~ 03	
청약	09/09 ~ 10	
상장	09/21 예정	

공모개요	↓ PDF
IR BOOK	↓ PDF
웹캐스팅	→ URL
공모분석보고서	↓ PDF
증권신고서	↓ PDF